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81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한병도의원 (2202552)	2024. 8.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2205848)	2024.11.25.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정부제출 (2205889)	2024.11.2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2.20.)는 위 3 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 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 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

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기관에서 제외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22조 등).

- 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실질에 맞게 변경함(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 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 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 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6조의12).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통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함. (안 제73조 및 제78조).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를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로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국무총리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 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 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 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1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으로,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을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를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 라 한다)의"를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을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각각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4조제3항"을 각각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1항 후단 중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

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청장과"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3항"을 각각 "제60조

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의3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2부터 제66조의14까지를 각각 제8장 제66조의13 및 제66조의14, 제9장 제66조의15로 하고, 제66조의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 3. 공간의 수용 능력
-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 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

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 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8조제3항 중 "기술료의 징수·사용"을 "기술료 등의 사용"으로 한다. 제78조의3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6조제5항, 제52조제11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 제3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

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한다.
- 제5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1 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상근하여야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 속하게 제공 ·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 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의 장은 수색・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 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 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 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 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 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 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 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 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 | 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 •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 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 획으로 본다.
-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재난에 관한 대책
-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 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 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 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 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 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 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리에 관한 대책

<신 설>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 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 ·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 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 야의 계획으로 본다.
-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 령·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 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생략)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작 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 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집행계획) ①
<u>제22조제5항</u>
<u>거쳐</u> -
② (현행과 같음)
③ <u>ম</u>
<u> 난관리책임기관(「지방공기업</u>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
<u>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제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ll 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u>①</u>
<u>이 경우 재난관</u>
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 및 사
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
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
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
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
획에 대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
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로 ㅁㅗ기 코ㅛ한 '이 ㅗ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 립) <신 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 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 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 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④ -----제2항-----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립) ① 시·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 여 매년 시·도의 재난 및 안 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u>②</u> <u>3</u>	<u> </u>
관리기본계획	
시 · 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
<u>침을 작성하여</u>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 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 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 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 제의 수립) <신 설>

① 시·도지사는 <u>제24조제3항</u> 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 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

<u>.</u>
<u>⑤</u> <u>제4항</u>
제3항

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u>① 시장·군수·구청</u>
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
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
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u>하여야 한다.</u>
②시·도안전관
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
<u>구안전관리계획의</u>

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 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 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3</u> 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 게 보고하고, <u>제2항</u>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 제 의 제출 및 보고) ① (생 략)

<u>③</u>	
	- <u>관할 시장·군수</u>
<u>• 구청장</u>	
<u>4</u>	<u>제2항</u> -
제3항	
<u>(5)</u>	<u>제4항</u> -
	<u>제3항</u>
테25조의2(집행	계획 등 추진실적
이 계츠 미 ㅂ	[고] ① (혀해라 가

-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 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 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은 <u>제25조제3항</u>에 따라 확 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 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 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25</u><u>조제3항</u>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

ш /		
② <u>제23조제3항에</u>	따른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은	<u> </u>	
③		
<u>제25조제4</u> 힝	<u>+</u>	
4		- <u>제25</u>
조제4항		

은)

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 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 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⑧ (생 략)
-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 ④ (생 략)
 -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u>제1항</u>에 따라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 1. ~ 5. (생 략)
- ⑥ (생략)
-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 7 ⑩ (생 략)
 - 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장으로 각각본다.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 저가) ① · ② (생 략)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①
<u>제5조</u>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
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

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

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

1. ~ 5. (현행과 같음)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 지 ③ (생 략)

④ <u>소방청장과</u>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 정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
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
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
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u>.</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
행) ①
제60조제4항

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경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있다.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u>제5항</u>
 ① 제1청세도 보고취고 레그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
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
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
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
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
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 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 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
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
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1항 또는 제2항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 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사회재난 중 <u>제60조제3항</u>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지역의 재난
- ②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 ⑦ (생 략)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저
 ② (생 략)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u>국세 체납</u> <u>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u> <u>예</u>에 따라 징수한다.

1. (현행과 같음)
2제60조제4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4
-11 CO 그 기 4호]
<u>제60조제4항</u>
· ⑤ ~ ⑦ (현행과 같음)
세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3
<u>국세 강제징</u>
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u> </u>

④ (생 략)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53호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 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 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

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집

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 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 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다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
 를 각각 준용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다중운 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 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생 략)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생 략)

제9장 보칙

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생 략)

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 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 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 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 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 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 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현행 제66조의12와 같음)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현행 제66조 의13과 같음)

제9장 보칙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현행 제66조의14와 같음)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행정안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 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료를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
-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 ③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방 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② (생 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 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 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 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 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 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 부받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 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 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 용할 수 있다.
 - 사업
 -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シ
· ② (현행과 같음)	
3	_
	_
	_
	_
<u>기술료 등의 사용</u>	_

정	하는	바에	따	라	전문기관	등
에	위틱	'할 수	= 9	니다		

④ (생 략)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
는 제66조의12제4항	